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UBS파워인덱스 증권투자신탁(제1호)[주식-파생형]

2. 주요 변경내용

1)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
2) 최근일자 기준 업데이트
3) 자본시장법, 시행령 등 개정사항 반영

3. 변경효력발생일 : 2016년 12월 6일

4. 대비표

[투자설명서]

구 분	변경전	변경후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(추가)	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6년 12월 6일 1)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2) 최근일자 기준 업데이트 3) 자본시장법, 시행령 등 개정사항 반영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5.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생략)	**5.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운용현황 업데이트)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4.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** <신설>	**14.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** 나. 과세 **(5)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및 공통보고기준(CRS)** 대한민국을 비롯한 기타 여러 국가들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(MCAA)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예정이며, 이의 이행을 위하여 OECD 에 의하여 마련된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인 공통보고기준(Common Reporting Standard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)을 도입하였습니다. 해당 협정의 일정에

		따라,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의거한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의 조세 당국 등에 보고될 수 있으며,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**1. 재무정보** (생략)	**1. 재무정보** (업데이트)
제 5 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**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** 나. 수시공시 (2) 수시공시 5)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,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,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(3)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. -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 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	**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** 나. 수시공시 (2) 수시공시 5)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,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,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및 법 제12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(3)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. -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 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
제 5 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	<신설>	6.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해 필요한 사항		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경전	변경후
Ⅱ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	[1] 투자전략 3. 운용전문인력 (생략)	[1] 투자전략 3. 운용전문인력 (운용현황 업데이트)